

농업기술센터 부분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5. 4. 6. ~ 4. 8.(3일간)

 감사범위 : 2013. 4. ~ 2015.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2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7건(주의 5, 시정 1, 현지시정 11)
 - 본 처분 6건(주의 5, 시정 1)

○ 재정상 조치

- 1건 30,000원(추징 1건 30,000원)

주요지적사항

1. 청사 보안 점검 소홀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 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4월부터 2015.4월 감사일 현재까지 15건에 대하여 청사 보안점검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원천징수 등의 금지 위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의하면 보수지급 기관은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부담금 등의 원천징수,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 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 징수 또는 공제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3장 지방공무원 원천징수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장의 원천징수 동의서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2013.4월 ~ 감사일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매월 월액여비 지급 시 상조회비, 전별금, 동호회 회비 등을 원천징수동의서 없이 공제

▶ 지출원은 본인에게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아서 보수에서 공제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 1건, 2014년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정부수입인지 및 예천군수입증지 미소화

- 인지세법 제3조제1항(과세문서 및 세액)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소인을 붙여 인지세를 납부(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서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천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서에 1만원의 예천군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벼 우량종자 증식 자율교환시범사업용 농자재 구입에 대한 계약 후 지출함에 있어 정부 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예천군수입증지 미첨부
- ▶ 미소화한 수입인지 20,000원과 예천군수입증지 10,000원을 소화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5. 지출 및 지급의 원칙 위반(증빙서류 미첨부)

-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및 같은 규칙 제67조(개산급의 정산)에 의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 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3년도 예천군○○○○○○○ 육성을 위한 농장안내판 제작 및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사진대지)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
- ▶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세출예산 집행 금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 의자 교체(5백만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무용 비품구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